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간단체 및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59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민간단체 및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2 신설)	2
※ 참고 [국가유산지킴이 현황]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문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5.

다. 회 부 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민간단체 및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민간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호 및 향유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

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현행법 제4조²⁾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 제5조³⁾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1)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국가유산을 향유할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시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유산청은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국가유산지킴이 활동지원 등)⁴⁾을

4)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국가유산보호기금, 1138-305)의 2026년도 계획액은 21억 1,100만원임.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며,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이고, 국가유산의 지속적·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유산의 소유자 등 민간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각 주체별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 개 요

- 목 적 : 국가유산을 함께 가꾸고 지켜가는 국민참여형 문화운동
- 사업기간 : 2005~ 계속
- 참여대상 : 개인, 가족, 학교,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활동대상 : 국가 및 시도 지정·등록유산, 비지정유산 등
- 사업내용
 -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의 환경정화,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
 - 기업·공공기관 등 후원·협력 사업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

□ 운영 방식

- (위촉) 개인·가족·민간단체 등 활동 지원
 - 신청(교육)→위촉(협의)/공모(선정)→현장 활동(지원)→행사·포상
 - * 신청(교육) : 연 4회 / 온라인 및 현장교육
 - * 위촉(협의) : 연 4회 (1월·4월·7월·10월) / 4년 단위 재위촉
 - * 봉사확인증 발급 : 현장 활동기관 발급, 청소년지킴이 온라인 발급
 - * 활동관리 : 자원봉사 활동성과 온라인(홈페이지) 보고
- (공모) 학교·민간단체 등 사업지원 및 관리
 - 공모(선정)→교육→현장 활동(지원)→간담회·워크숍→행사·포상
 - * 국가유산 중간지원 거점센터(7개), 보호지원(30개), 청소년(25개교), 청년(30팀) 등
 - *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15년 설립) 위탁 공모사업 운영
- (협약) 기업·공공기관 등 협약·후원 사업 운영
 - 신규 협약 체결 및 추가 후원·협력사업 개발
 - 협약기관 정기 협의회(1회), 워크숍(연 1회), 포상·행사초청